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변 호	22-64
------------	-------

제출년월일 : 2022. 8.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 이유

옥외광고물 등으로부터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사무를 전문적 기술과 장비를 갖춘 기관과 재계약 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의 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 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

2) 추진 필요성

-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바, 전문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함
- 옥외광고, 건축, 전기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안전점검 사무를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를 수행할 수 있음

다.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구분	세부내용
안전점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연장포함) 대상 광고물 안전점검
	풍수해 등 재난·재해 안전사고 위험 광고물 안전점검 등
	추락 등 안전사고 유발 위험 광고물에 대해 즉각 조치 포함

라. 위탁기관 개요

1) 위탁기관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서울특별시 옥외광고협회 마포구지부	안재홍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길 16, 교평빌딩 503호	02-338-8886

2) 운영실적

-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 안전점검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신고·허가 광고물 안전점검 (연장포함)	151	244	287	81
※ 대상 기간: 2019년 7월 ~ 2022년 6월				

- 풍수해 및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실적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490	418	452	422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158	159	175	하반기 예정

3)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구분		수량	비고
집기현황	사무실	보유	33㎡
	업무차량	1대	1톤 포터트럭
	사다리	2개	
	절연저항계	1개	누전(전열)점검용
	망원경	1개	
	카메라	2개	
	컴퓨터	3개	
	복사기, 팩스	3개	
	공구세트, 줄자	2개	

4) 인력 및 기술자격 현황

자격증 종류	마포구지부 자격증 소지자 현황
건축산업기사	1명
전기분야	1명(배전전공 자격증)
옥외광고분야	1명(옥외광고사2급)

5) 타 자치구 위탁 현황 : 23개 자치구 (사)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에 위탁,

마포구 및 강남구는 지부에 위탁

※구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와 관련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마.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근거 및 기간

1) 근거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2021. 5. 6.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위탁기간 : 2022. 7. 1. ~ 2025. 6. 30.(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2009년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이후 재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구조례 별표3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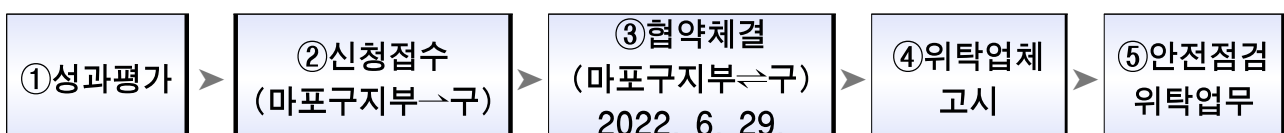
(단위: 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도시안전과	
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	
선진광고문화 조성(옥외광고발전기금)	
광고물 개선사업	
201 일반운영비	48,000
01 사무관리비	48,000
1)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20,000
10,000,000원*2회	
1)옥외광고물 안전점검	28,000
50,000원*560건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현 위탁기관은 해당 기술자격 및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자. 추진 과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

제38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5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한 곳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⑤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 ⑥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외부기관의 성과평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3]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구 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과 건물 측·후면 4층이상 벽면에 설치하는 벽면이용간판, 높이가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개 개 m ²	· 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20제곱미터초과 4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4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2,000원 45,000원 3,000원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한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개 개 m ²	· 연면적 3.5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3.5제곱미터초과 1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원 22,000원 3,000원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높이가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개 개 m ²	·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10제곱미터초과 2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5,000원 22,000원 1,500원
4. 현수막게시시설	개 개 m ²	· 연면적 4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40제곱미터초과 80제곱미터이하 · 연면적 8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2,000원 45,000원 2,000원
5. 기타 광고물등		· 가장 유사한 광고물등에 준함	